

부산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1가단309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21. 10. 6.

판결 선고2021. 12.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5,944,518원 및 그 중 55,818,34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30,526,416원 및 그 중

30,400,336에 대하여

각 2021. 2. 26.부터 2021. 2. 2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21. 6. 29.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10. 28.

접수 제751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그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21. 2. 28.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7%)에 따른 지연손해금,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D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7. 11. 3.	E	30,000,000	기업운전일반자금	D 은행
2	2020. 6. 11.	F	27,000,000	일반자금	G 은행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은행 및 G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는데, 2020. 10. 13.경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위 각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21. 2. 26.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30,400,336원, G은행에 25,747,660원을 각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 중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추가보증료 126,080원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위변제 후 329,648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은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의 상황에 충당되어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잔액은 25,418,012원이 되었으며, 위 회수 부분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90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C은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28. 피고 B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잔액 55,818,348원(= D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잔액 30,400,336원 + G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잔액 25,418,012원), 추가보증료 126,080원, 확정지연손해금 90원의 합계 55,944,518원(= 55,818,348원 + 126,080원 + 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잔액 55,818,348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D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잔액 30,400,336원, 추가보증료 126,080원의 합계 30,526,416원(= 30,400,336원 + 126,08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잔액 30,400,336에 대하여 각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1. 2. 26.부터 2021. 2. 2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6. 29.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C은 2020. 10. 28.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인 2021. 2. 26.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인 2017. 11.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중 D은행에 관한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인 2020. 10. 13.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1. 2. 26.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매매예약을 하는 등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256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포항시 남구청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B은 시가 5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이를 초과하는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매예약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B에게 2019. 10. 2. 30,000,000원, 2020. 1. 5. 27,000,000원, 합계 57,000,000원을 대여하고(그 중 16,744,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일 뿐, 당시 피고 B의 채무 상태 및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9. 10. 2.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2020. 1. 5. 27,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각 송금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H조합에 대한 대출채무(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일부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최초 송금일인 2019. 10. 2.로부터는 1년 이상, 두 번째 송금일인 2020. 1. 5.로부터는 9개월 이상 경과할 때까지 따로 담보가 설정된 바 없었다가, 신용보증사고가 2020. 10. 13.경 발생하자 그로부터 15일만인 2020. 10.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피고 C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경수

별지